

● 법무부고시제2020-250호

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.

2020년 07월 17일

법무부장관

성명	생년월일	성별	외국국적	등록예정기준지	근거규정	수반취득	비고
권화영	1950.**.**	남성	러시아(연방)	인천광역시 중구 ****	국적법 제06조2항1호		
자평찬	1979.**.**	여성	중국	경상북도 김천시 ****	국적법 제06조2항1호		
바오엣지레이첼	1987.**.**	여성	필리핀	경상북도 안동시 ****	국적법 제06조2항1호		
보응옥빅	1986.**.**	여성	베트남	경상북도 영주시 ****	국적법 제06조2항1호		
버티김용	1980.**.**	여성	베트남	경상남도 거창군 ****	국적법 제06조2항1호		
응우엔티탐	1989.**.**	여성	베트남	경상북도 김천시 ****	국적법 제06조2항1호		
하티응억람	1987.**.**	여성	베트남	경상북도 구미시 ****	국적법 제06조2항1호		
쩨티흥비엣	1991.**.**	여성	베트남	경상북도 안동시 ****	국적법 제06조2항1호		
호양티무이	1984.**.**	여성	베트남	경상북도 울진군 ****	국적법 제06조2항1호		
분쿤데아	1993.**.**	여성	캄보디아	경상북도 예천군 ****	국적법 제06조2항1호		
쩨티투이짱	1986.**.**	여성	베트남	대구광역시 북구 ****	국적법 제06조2항1호		
궤리	1977.**.**	여성	중국	대구광역시 달서구 ****	국적법 제06조2항1호		매이한
매이한	2003.**.**	남성	중국	대구광역시 달서구 ****	국적법 제08조	궤리의 수반취득	
칭티투창	1987.**.**	여성	베트남	경상북도 안동시 ****	국적법 제06조2항1호		
사리시노운	1994.**.**	여성	캄보디아	경상북도 김천시 ****	국적법 제06조2항1호		
레타인후옌	1998.**.**	여성	베트남	경상북도 군위군 ****	국적법 제06조2항1호		
콩플난판닛사라	1985.**.**	여성	타이	경상남도 합천군 ****	국적법 제06조2항1호		
아이숙호른	1993.**.**	여성	캄보디아	경상북도 청도군 ****	국적법 제06조2항1호		
팜티로안	1996.**.**	여성	베트남	경상북도 구미시 ****	국적법 제06조2항1호		
누엔티김녹	1994.**.**	여성	베트남	경상북도 경산시 ****	국적법 제06조2항1호		
누엔탄투이	1985.**.**	여성	베트남	경상북도 김천시 ****	국적법 제06조2항1호		

● 환경부고시제2020-158호

전국 생태·자연도(生態·自然圖) 도엽 개정 및 일부 수정·보완 고시

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 및 수정·보완된 생태·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7월 17일

환경부장관

<개정 고시>

1. 대상지역 : 거제(348033) 도엽
2. 근거법령 :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
3. 생태·자연도 도엽 개정 고시 내용

순번	도엽 번호 및 도엽 명	
1	348033	거제

4. 생태·자연도 도엽은 환경부 홈페이지(환경공간정보서비스, <http://egis.me.go.kr>)에 게재
<수정·보완 고시>

1. 대상지역 :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산218-1번지 일원 등 4개소
2. 근거법령 :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
3. 생태·자연도 수정·보완 내용

대상지역	도엽	생태·자연도 등급		비고
		당초 고시	수정·보완	
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산218-1번지 일원	모곡(377071)	1등급	3등급	식생
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산198 일원	양동(377121)	1 등급	1 등급	식생, 포유류
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작촌리 103번지 일원	좌향(377141)	1등급	2, 3등급	식생
경기도 안산시 시화호 일원	오이(376114) 고잔(376123)	1등급	1, 3등급	식생, 멸종위기야생생물

4. 생태·자연도 수정·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(환경공간정보서비스, <http://egis.me.go.kr>)에 게재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등(준비서 포함)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.

●국토교통부고시제2020-516호

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

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6조에 따라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, 같은 법 제1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07월 17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주택지구의 명칭, 위치 및 면적
 - 가. 명 칭 :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
 - 나. 위 치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원
 - 다. 면 적 : 9,948㎡
2. 주택지구의 지정일 : 관보게재일